

의안번호	2219288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6.10.1.
추 계 번호	26D2903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제21호의3 신설	「약사법」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·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	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제18호 신설	「약사법」 중 약국의 개설·운영에 관한 범죄를 보건복지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범위로 규정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제21호의3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제18호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 직무 부여(안 제5조 및 제6조)
 - 「약사법」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·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,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는 경우 직무교육 실시, 수사·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, 수사활동비 지급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는 공무원의 수와 구체적인 수사 범위,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, 교육훈련비 등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(약국)에 대한 단속, 환수결정 및 징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불법개설 의료기관(약사)의 주요 유형

실소유자	불법내용
개설자격 미보유자(약사)	비약사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·운영
개설자격 보유자(약사))	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 2의 약국을 개설·운영
	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·운영

자료: 보건복지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bo.go.kr